

학사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7.05.02.

제2차 개정 2019.06.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대학이념과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규정 제5조(교육과정위원회)에서 정하지 않은 학사관리에 필요한 학사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사관리를 위한 학칙 등 제 규정에 관한 사항
2. 학사관리(수업, 학적관리, 성적평가 등)를 위한 계획수립, 운영에 관한 사항
3. 강의평가의 계획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교육만족도 및 성적평가에 대한 계획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**교육연구처장**, **인재개발원장**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내·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7.12.05., 2019.06.25)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**교육연구처장**으로 한다. (개정 2019.06.25)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④ 학사 관련 업무에 대한 연구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.

②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부-191, 2017.05.12)

이 규정은 2017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부-502, 2017.12.05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